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 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및 목적 개정 (안 제1조)

- 조례명을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을 조례의 목적 취지에 맞게 변경

나.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(안 제6조)

-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
-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를 1명에서 5명으로 확대

다.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 (안 제16조)

-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과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

- 의 100분의 11이하(단, 낙후지역은 100분의 12이하로 한다)
- 라.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시 이윤율 (안 제17조)
- 건축원가에서 자본비용과 개발대행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2이하(단, 낙후지역은 100분의 13이하로 한다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'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